

2023학년도

가고싶은 학교 +
행복한 교육 공동체

활짝 피어라
전북교육!

학생생활규정

IKSAN JIWON MIDDLE SCHOOL



익산지원중학교

<http://www.jiwon.ms.kr>

익산지원중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23. 12. 21.(익산지원중학교-13250)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익산지원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익산지원중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 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 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4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5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6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품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수업 태도)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잡담, 장난, 노래)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고 허락을 받는다.

⑦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⑧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⑨ 항상 수업 전 후 자신의 주변환경(쓰레기줍기, 줄맞추기 등)을 정돈하고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한다.

⑩ 각자 학급비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⑪ 수업 중에는 졸지 않고 자세를 바르게 하며 집중한다.

⑫ 수업 중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며 불응하지 않는다.

⑬ 시작종이 치면 자리에 앉아 수업준비를 하고 종료종이 치더라도 돌아다니지 않고 수업종료는 교사의 지도에 따른다.

⑭ 수업시간에 교사가 출입을 할 때 공손히 인사한다.

⑮ 예비종이 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수업준비를 위해 교실에 입실한다.

⑯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⑰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8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정에서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 ⑦ 학생은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및 도박을 하지 않는다.

제9조(용모)

- ①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 및 복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은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후, 세부 사항은 학생자치규정에 따른다.
- ② 학생은 생활규정에 맞는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 및 복장으로 학교생활을 한다.
- ③ 교복은 원래 형태에서 변형을 하지 않는다.
- ④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 및 복장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학생들간의 위화감 조성, 이질적 분위기등이 조성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안을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10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은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11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2조(소지·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 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제13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1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 · 특정 학년 · 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 · 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4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전자기기 사용) ① 조 · 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식사시간 등 학교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PC, 개인휴대폰, 태블릿 등)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 · 관리할 수 있다.

④ 학생은 등교 후 하교할 때까지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다.-급한 용무로 전화를 할 경우가 생기면 학생은 담임교사의 허락하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고

전화를 할 수 있다.

- ⑤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가 도난 분실 파손이 되면 원인을 제공한 학생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 ⑥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개인이 소지하고 관리책임의 의무는 학생 스스로 갖는다.
- ⑦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책상안에 넣지 않고 가방, 사물함, 주머니 등에 넣어서 소지하고 관리한다.
- ⑧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⑨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는 교육활동 중에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으며, 교육활동에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
- ⑩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로 게임, 사행성 도박 등의 교육활동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⑪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교사는 전자기기를 수거한다.
- ⑫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년부(담임)교사와 학부모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년부(담임)에서 수거 보관할 수 있다.
- ⑬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 운영 중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의결하여 시행한다.

제16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

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9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3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

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10일 1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5. 징계가 결정되어도 이행을 하지 않는 학생은 가중하여 다시 징계를 내린다.
 6.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처분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치를 승계하여 징계(추가, 가중, 경감 등 변경)를 할 수 있다.
 7. 통고제: 제1항~제4항, 6항 중 여러 조치를 취해도 반성없이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고 이행도 잘하지 않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법원에 요청하여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6. 학생생활표와 징계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학 생 생 활 표】

| 내용 | 항 목 |
|---|--|
| 준법 | 학생은 교사에게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 | 공손한 말투와 바른 자세로 교사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 |
| | 실내에서는 청결유지와 공중위생을 위해 개인실내화를 착용하고 학교 공용 슬리퍼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지 않는다. |
| | 학생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 환자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교직원의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
| | 교정에서 오토바이, (전동)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지 않는다. |
| | 두발, 용의 복장이 규정에 위반하지 않는다. |
| | 교문 이외 학교 출입 및 월담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 타 학급 및 타 학년 출입을 하지 않는다. |
| | 급식실안에서 한줄로 서서 잡담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한다.(새치기 금지) |
| | 교내 시설물, 공공기물을 아끼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급식실을 이용할 땐 영양교사의 지도에 따르며 줄서기, 식사, 잔반 처리 등의 예절을 잘 지킨다. |
| | 교내에서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
| | 욕설이나 비속어, 남을 헐뜯는 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
| | 교내 시설물, 공공기물을 아끼고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 |
| | 교실에서 방송이 나오면 조용히 귀를 기울인다. |
| | 교내에서 침이나 가래를 뱉지 않고, 쓰레기나 오물(껌, 휴지, 분필 등)은 꼭 휴지통에 버린다. |
| | 남의 물건은 절대 손대지 않으며, 주인의 허락을 맡은 후 만질 수 있다. |
| | 교내에서는 전열기구(고데기 등) 사용을 금지한다. |
| | 학교에서 전달하는 안내문이나 통지서, 가정통신문을 잘 전달한다. |
| | 실내 소란 행위(심한 장난을 포함한 각종 놀이 등)를 하지 않는다. |
| | 교무실 입실시 노크 후 인사하고 용무를 본 다음 인사하고 퇴실한다. |
| 오락, 도박행위를 금한다. (각종 카드 및 휴대전화를 통한 게임 및 도박 등) | |

| 내용 | 항 목 |
|----------------------|---|
| |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파손, 흠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 폭력등 에 관한 대처 |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
| |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 |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 |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순서대로 알린다. 1.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3.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7.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
| |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
| 이성 교제 |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 |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 |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 |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 |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이성간의 스킨십은 일체 금지한다. | |
| 교외 생활 |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한다. |
| |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 | 본교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 |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 |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 |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 |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않는다. | |
| 기타 | 학생생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 학년협의회에서는 생활태도확인서를 발부 |

| 내용 | 항 목 |
|----|--|
| | 할 수 있고 3회 이상 발부가 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소집될 수 있다. 위의 사항에 적시되지 않았을지라도 사회 통념상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징 계 기 준 표】

| 구분 | 행 위 | 징 계 규 정 | | | | |
|----------------|---|---------|-----------|----------|----------|----------|
| | | 주의 등 | 학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예절 | 교사에게 불경하고 비하하는 언행을 한 학생 | | ○ | ○ | ○ | ○ |
| |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 | 교사에게 불손한 언어, 막말, 폭언, 협박, 반항을 하거나 혹은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 ○ |
| 준법 | 교사에게 거짓말을 한 학생 | ○ | ○ | ○ | ○ | |
|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교내에서 흉기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 ○ | ○ |
| | 타인의 명의와 정보를 도용·유포하거나 피해를 끼친 학생 | | ○ | ○ | ○ | |
|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 공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 ○ | ○ |
| | 징계지도(생활교육위원회)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교내에서는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타는 학생 | ○ | ○ | ○ | | |
| | 무면허로 차량(자동차, 오토바이)을 운전한 학생 | | ○ | ○ | ○ | ○ |
|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 |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적으로 방화, 훼손한 학생 | | | | ○ | ○ |
|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 | 경찰기관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 | ○ | ○ |
|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 |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 ○ | ○ |
|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 ○ | |

| 구분 | 행 위 | 징 계 규 정 | | | | |
|----------|--|---------|-----------|----------|----------|----------|
| | | 주의 등 | 학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 수업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 |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 | ○ | ○ | ○ | ○ |
| | 시험 중 소란을 피워 시험방해를 한 학생 | | ○ | ○ | ○ | ○ |
| | 고사중 휴대폰, mp3등 전자기기를 소지한 학생 | ○ | ○ | ○ | | |
| | 시험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 ○ |
| 근태 | 미인정근태(결과, 조퇴, 지각, 결석)을 한 학생 | ○ | ○ | ○ | | |
| | 미인정근태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
| | 미인정근태를 하고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약물 | 흡연, 음주 등을 한 학생(담배, 술 라이타 소지자포함) | | ○ | ○ | ○ | ○ |
| |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 ○ | ○ |
|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교내·외) | | | | ○ | ○ |
| 퇴폐 행위 | (사이버)도박 등을 한 학생 | ○ | ○ | ○ | ○ | |
| |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벽이 있는 학생 | ○ | ○ | ○ | ○ | |
| | 학생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을 한 학생 | ○ | ○ | ○ | ○ | ○ |
| | 불건전 이성교제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학생 | | ○ | ○ | ○ | |
| | 시민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 ○ | ○ | |
| 기타 | 【징 계 기 준 표】에 있는 행위는 학생의 행동, 말투, 태도 등에 따라 복수로 적용하고 학생생활규정위원회에 소집한다. | | | | | |
| | 제3장 학생생활 일부와 【학 생 생 활 표】에 있는 항목에서 반성없이 상습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소집한다. | | | | | |
| | 생활규정 운영에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하면 학생생활규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 | |
| | 징계 기준외의 것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 | | | |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은 그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일 이내에 학교의 장에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 학생 또는 보호자가 조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학교의 장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3. 학교장이 조치 이행 중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등을 고려하여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징계처분의 이행 방법)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 부서나 담임교사,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운 경우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25조(장애학생대상 학생징계)

- ①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 ②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신고 및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서 가해학생을 격리조치 할 수 있다.

제26조(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를 이유로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처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처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처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8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지원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29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29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0%¹⁾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전라북도교육청 권장 사항이며 민주적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이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학생생활규정’은 공포한 날(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익산지원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 1 (고시)제11조 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지정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또는 일과 종료 후 : 되돌려줌 |
|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 3일 |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 | | |
|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등 | | | |

■ 익산지원중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 ·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6조 관련)

| 생활지도 | 요건 |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유의점 | 학습지원 |
|-----------------------------------|---|--|---|--|-----------------------|
|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 나 |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
| | 나 |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함(학교 여건에 따라 정함)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 | | |
| 유의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 | | | |